



##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sup>1)</sup>

2015. 5. 7 | 이상동\_새사연 부원장 | sida7@saesayon.org

현재의 구조에서 단순히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만으로 부족한 복지재정을 해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기업의 법인세 체계를 둘러싼 합법적 조세회피를 강력히 통제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몇 배에서 몇 십 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 초부유층이 법인세 체계 뒤에 숨어 실제로 얻게 되는 수익은 아직 거의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글에서 우리는 법인세를 증세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로 기업이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부를 가져간다는 점, 둘째로 법인세율이 오랜 기간 동안 가파르게 하락해 왔고 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법인세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사회보험료 등 1,2차 소득분배에는 기업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양한 해법들이 제기되고 있다. 막대한 기업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법,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최고세율과 최저한세율의 인상 등) 그리고 사회목적세를 신설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각자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제기되는 방법들이고 무엇보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기업들의 동참을 끌어낸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막대한 복지 재원을 충당하는 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예컨대, 현재 대기업들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전면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4조원 수준의 세수를 늘리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일반정부 예산 중 사회보호 분야의 지출액 비중을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20%p이상의 격차가 발생한다. 북유럽의 복지선진국 수준은 차치하고 OECD 평균 수준까지만 맞춘다 해도 어림잡아 최소 약 80~100조원의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 복지 재정에 있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여

1) 이 글은 필립 코틀러(2014), “필립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 더난 출판사와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newstapa.org/tax-haeven)”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기서 정밀한 전략이라 함은 먼저, 1차 분배의 핵심인 임금 몫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sup>2)</sup> 한다. 더불어 기본 3대 세제-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연쇄적인 관계를 고려한 배열과 증세 일정을 잡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골간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환경세제와 사회임금의 축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세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일이란 ‘좋은 그림’ 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밀한 전략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좋은 전략과 조응하는 ‘사회적 관계’ 를 창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인세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된다. 낮은 법인세, 낮은 기업부담의 이면에는 초부유층의 막대한 ‘합법적 조세회피’ 가 숨어 있다. 합법적 조세회피는 분배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국가의 조세기반을 허물어뜨린다. 대기업-초부유층을 정점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 구체적으로는 국가재정의 형태를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법인세의 1% 증세는 그 몇 배의 효과로 돌아올 것이다.

본 글에서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다국적 대기업들이 어떻게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래의 글을 읽기에 앞서 ‘만약 내가 초부유층이라면’ 을 가정해 보기 바란다. 실로 엄청난 탈세 규모가 보다 피부에 와 닿게 될 것이다.

## 법인세 탈세 방법 1. 수익 전취, 비용 전가

대기업들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 24.2%를 절세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 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세 표준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17.1%이다. 대기업들의 최저한세율이 17%이므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가능한 최고치까지 절세를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들의 절세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sup>3)</sup>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 군도, 바하마, 바누아투, 뉴 칼레도니아, 나우루, 버뮤다 등 어디 있는지도 생소한, 그러나 조세피난처로 잘 알려져 있는 곳들을 비롯해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의 조세피난처는 60곳 이상이나 된다.

2)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3) 미국의 조세정의시민연대(Citizens for Tax Justice) 등은 지난 2011년 미국 대기업들의 조세 회피 방법과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조세정의시민연대가 지적한 대표적인 탈세 방법으로는 해외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 ‘감가상각을 이용하는 방법’, ‘스톡옵션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산업별 보조금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Corporate Taxpayers & Corporate Tax Dodgers, 2008-2010, <http://www.ctj.org/corporatetaxdodgers/CorporateTaxDodgersReport.pdf>)를 참고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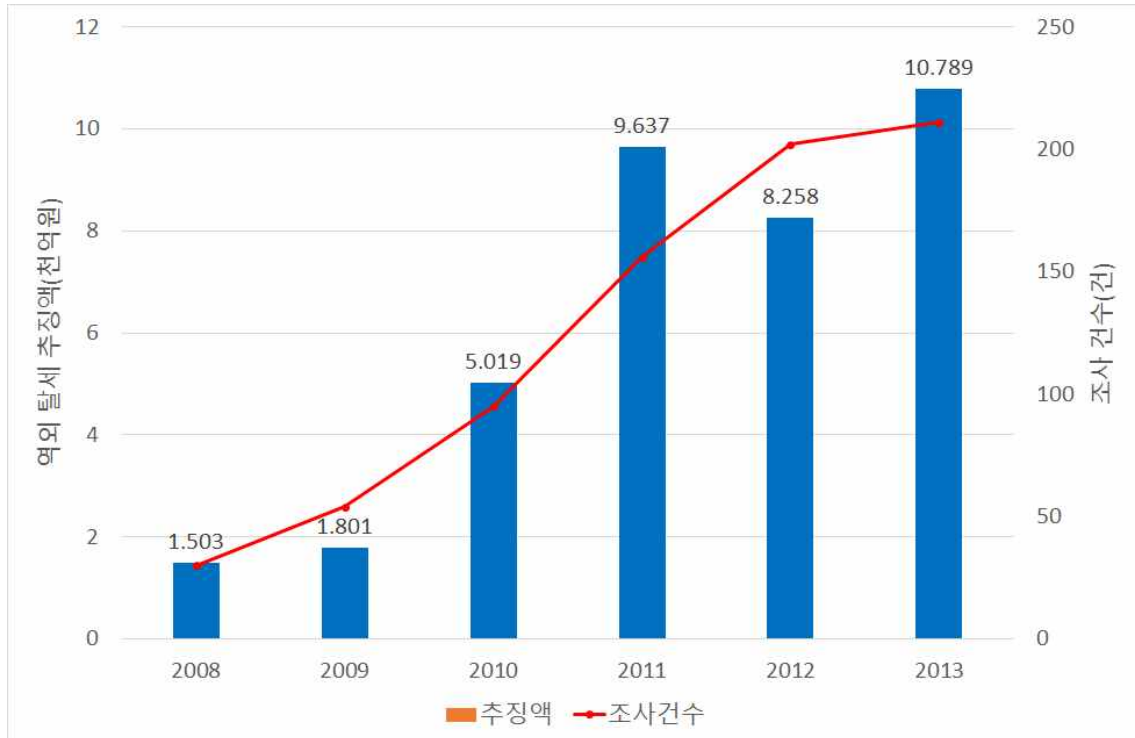


표 1. 조세피난처 관련 매체 보도

항목	규모	비고
역외 탈세 추정액 (2013년 귀속분)	1조 789억원	이 중 54%는 조세불복이 제기됨
최근 6년간 역외 탈세 추정 누적액	3조 7007억원	
최근 7년간 조세피난처 투자액	25조 2270만원	이 중 80%인 20조 655억원은 대기업의 투자액
조세피난처 국내 법인 수(추정)	160여 개	34개 대기업 관련 법인만 한정

출처: 국세청(2014. 2. 17) , 박원석 의원실(2014. 9.21), 오제세 의원실(2014. 9. 28) 등 보도 자료와 뉴스타파 기사 (2013. 4. 21) 등 종합

그림 1. 국세청의 역외 탈세 조사 건수 및 추정액 추이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 (2014. 2. 17)

대기업들은 이들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한다. 이 때 자회사의 실소유주가 주로 재벌의 후계자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자. 예컨대, 대기업 A가 원가 100억 짜리 물건을 국내에 있는 기업 B에 110억원에 팔아 10억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24.2%, 즉 2억 4200만원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대기업 A가 법인세 0%의 조세피난처 버뮤다에 설립한 자회사 C에 팔고 C가 다시 국내 기업 B에 판다면? 물론 이 때 물건이 버뮤다까지 갔다 오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그냥 전달하면 되니까. 대기업 A는 버뮤다 자회사 C에 원가인 100억원에 팔아 이익을 남기지



않고 C는 B에 110억원에 판다. 수익은 고스란히 버뮤다 자회사 C에 귀속되므로 법인세는 온데간데없이 날아간다. 조세피난처의 자회사는 본사의 수익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린다.

이런 식의 거래는 국세청의 과세표준 소득에 전혀 포착되지 않으므로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국세청은 해외 조세피난처의 역외 탈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3년 귀속분의 추정액을 1조 789억원으로 발표하 바 있다.

## 법인세 탈세 방법 2. 지분의 양도, 조세전도(tax inversion)

조세피난처의 자회사가 하는 일은 이 뿐만이 아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식의 지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조세전도 (tax inversion)’ 라는 방식이다. 미국에서 자주 활용되는 예로 설명하면 이런 식이다.

국내 A사가 세율이 낮은 해외 B사를 매수하기로 했다고 하자. 이 때 A사 지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B에 넘긴다면 B사가 소유한 A사의 지분만큼은 국내 세율이 아니라 해외 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 보통 A사는 매수에 필요한 대금을 주식을 발행해 치름으로써 지분을 B사에 양도한다. 이상의 방식은 현행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매수를 통해 A사의 국내 법인세 기반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많은 경우 조세전도 과정에서 조세피난처에 존재하는 A의 자회사 C가 개입한다. 예컨대 조세피난처에 있는 C사가 B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B사는 다시 A사의 소요 자금을 충당시키는 다단계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조세 피난처에 기업이익이 집중되게 하는 것이다.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래의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내 A사가 자국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법인세를 회피하여 해외로 이전되는 것과 같다. 첫 번째 방법은 개별 거래 수준에서의 탈세 방식이지만, 조세 전도라는 두 번째 방법은 아예 기업 전체 수준에서의 탈세 방식이라 할 것이다.



그림 2. 조세피난처 자회사를 통한 기업이익의 유출 및 법인세 회피



자료: 뉴스타파 화면 캡처

### 법인세 탈세 방법 3. 본사 해외 이전

마지막은 노골적으로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들이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생겼다. 케이만군도로 옮겨 버린 회계기업 액센추어, 아일랜드로 옮겨 버린 자동차부품 회사 이턴, 영국으로 이전한 제약업체 애브비사, 캐나다로 옮겨 버린 버거킹 등 1998년 이후 약 40여 개의 미국 상장 기업들이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나가며

프랑스 경제학자 Zucman은 2013년 “잃어버린 국가의 부 The Missing Wealth of Nations” 라는 책을 ‘21세기 자본’ 으로 유명한 Piketty와 함께 출간한 바 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에 관하여 가장 앞서 있는 학자로 인정받는 그는 이 책에서 주요 국가들의 탈세 규모를 추정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약 20%가 해외로 유출되었고 EU의 경우에는 세계 2위의 순채무국인 EU가 순채권국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한다.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여 법인세를 줄이고 이를 개인의 이익 극대화에 활용하는 초부유층의 행태가 우리나라라고 별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오히려 대기업에 관한 지



배력이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강력한 우리나라에서 초부유층의 역외탈세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통념에 부합한다.

현재의 구조에서 단순히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만으로 부족한 복지재정을 해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기업의 법인세 체계를 둘러싼 합법적 조세회피를 강력히 통제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몇 배에서 몇 십 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 초부유층이 법인세 체계 뒤에 숨어 실제로 얻게 되는 수익은 아직 거의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인세 증세 이슈를 몇 퍼센트가 적정한가와 같은 적정성 또는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민주주의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참고 문헌

국세청 보도자료, 2014. 2. 17. “역외탈세 추정세액, 2013년 처음으로 1조원 넘어”  
뉴스타파 기사, 2013. 4. 21, “조세피난처에 한국 현지 법인 160여 개 확인”  
뉴스타파 홈페이지 <http://newstapa.org/tax-haeven>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필립 코틀러(박준형 옮김), 2014, “필립 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 (원제: Confronting Capitalism)”, 더난 출판, 서울  
Citizens for Tax Justice, 2011, “Corporate Taxpayers & Corporate Tax Dodgers, 2008–2010”  
Zucman, 2013, “The missing wealth of Nations: Are Europe and the U.S. net debtors or net creditors?”



##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5월 6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고용,노동	4/21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상동
고용,노동	4/28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이상동